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관광과

제정 2017·9·29 조례 제1340호
일부개정 2018·11·16 조례 제1437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의 진흥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통계) 시장은 시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

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시티투어, 팸투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시장은 국가 및 경기도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제8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12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8·11·16, 2019·12·27>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관광안내소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위촉

제12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3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12조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②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위촉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를 등을 생산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관광 모니터요원으로서 유용한 제보실적이 있거나 관광 홍보요원으로서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이천시 관광협의회

제17조(이천시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관광사업의 등록

제19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제3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